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지속 발생하고 있는 철도 건널목 사고를 예방하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현재 열차 및 승강장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영상기록장치(CCTV)를 건널목까지 확대 설치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687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필요한 건널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철도건널목 중 영상기록장치 의무 설치 대상 규정(안 제30조제5항)
철도건널목 교차지점의 도로·철도 교통량이 많아 철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널목을 영상기록장치 의무 설치 대상으로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2024. 4. ~ 2024. 5.)

대통령령 제 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에서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널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건널목”이란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량건널목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건널목을 말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 ① ~ ④ (생략) <u><신설></u>	제30조(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에서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물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건물목”이란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량건널목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건물목을 말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연 락 처	(044) 201 - 4624